

## 구미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발의연월일	2024. . .
발 의 자	장미경 의원 외 1인

# 구미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 (장미경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2024. . .

발 의 자: 장미경·정지원 의원(2인)

찬 성 자 김근한·김민성·김영길·김정도  
이상호·이지연·허민근 의원(7인)

### 1. 제안이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된 구미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의용소방대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3. 조례안: 붙임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조, 제16조

2)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3) 「지방자치법」 제13조

4)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부서검토: 안전재난과 의견제출(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붙임)

## 구미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된 구미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구미시 의용소방대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4조(포상) 시장은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화재진압 및 예방, 구조·구호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읍 또는 면에 둔다.

③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을 따로 정하여 그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를 화재진압 등을 전담하는 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용소방대”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구역의 특성과 관할 면적 또는 출동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7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6조(활동비 지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임무)** 법 제7조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2.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3.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략)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검 토 의 견 서

부서명: 안전재난과

조 례 명

구미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 □ 검토 사항

- 근거 법령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활동비 지원)
  -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경비부담)

## □ 주요 사항

- 구미시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조례 구성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의용소방대 지원 범위(안 제3조)
  - 포상(안 제4조)

## □ 검토 결과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원 근거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

- 기대효과: 구미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용소방대원들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구미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
- 소요예산: 연간 약 235백만원
  - \* 비용추계서 첨부
- 문 제 점: 해당없음

# 구미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재정수반요인

-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피복구입, 소방기술 경연대회 등 재정소요 예상

### 2.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 기간: 2025년 ~ 2029년
- 의용소방대 운영을 위한 출동수당, 피복구입, 소방기술 경연대회 등 지원

###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분		연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세출	○ 출동수당	145,000	150,000	155,000	160,000	165,000	775,000
	○ 피복구입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125,000
	○ 활동운영비	31,200	31,200	31,200	31,200	31,200	156,000
	○ 소방기술경연대회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 영호남교류행사	3,000	6,000	3,000	6,000	3,000	21,000
□ 총 비용		224,200	232,200	234,200	242,200	244,200	1,177,000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구분		연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국비							
도비							
시비		224,200	232,200	234,200	242,200	244,200	1,177,000
민간							
기타							
합계		224,200	232,200	234,200	242,200	244,200	1,177,000

### 5. 부대의견: 해당없음

### 6. 작성자

- 안전재난과 안전기획팀 권기팔(☎054-480-6732)